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0206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0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홍미옥	김건희	정광희	길수철	전결 10/05 김경호
협 조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기 획 경 제 국
(기 획 예 산 과)

제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I 큰 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3항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II 추진개요

1. 일 시 : 2015. 10. 8.(목) 09:00 ~ 12:00
2. 장 소 : 기획상황실
3. 심의위원 : 총14명(위촉직 11명, 당연직 3명)
 - 가. 위원장 : 오세경(건국대 교수)
 - 나. 당연직 :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4. 안 건
 - 가. 기업(무역) 전시회 참가비 지원 공모사업 심사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III 심의대상

1.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기업(무역) 전시회 참가비 지원

- ◆ 공모사업 자체심사
 - 심사일시 : 2015. 9. 1 ~ 30
 - 심사방법 : 사업별 대표제안자와 심사위원(4명) 참여, 제안자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후 제안자 투표
 - 심사기준 : 일반평가(소재지, 종업원수), 기술평가(국내외 인증, 기술개발), 마케팅전략(전시회준비도, 제품경쟁력, 지원효과성), 기업확인(벤처인증기업, 전시회참가경력) 등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심의일시 : 2015. 10. 2(금) 14:00
- 심의장소 : 부구청장실
- 참석대상 : 심의위원(각국·소장), 기획예산과장, 소관부서장

IV 심의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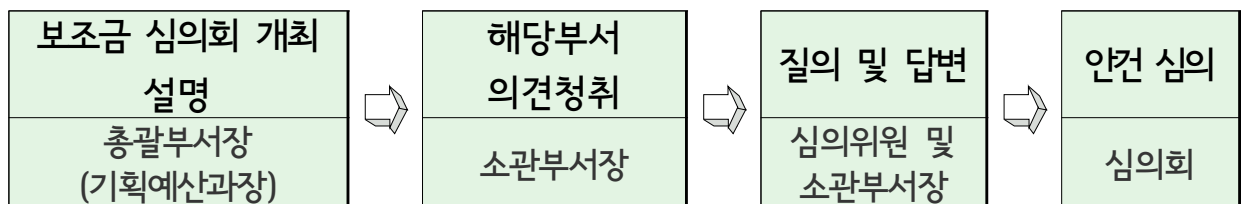
1. 심의기준

- 가. 조례 제·개정사항의 적절성
- 나.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

2. 심의방법

- 가.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공모사업절차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 나. 해당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V 심의절차



VI 향후 추진 사항

1.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

- 가. 일 시 : 2015년 10월 23일 14:00 ~ 18:00 예정
- 나. 장 소 : 기획상황실
- 다. 심의 내용
 -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자부담율) 등에 대해 심사

붙임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